

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 경위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제출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(의안번호 제503호)
- 검토기간: 2023. 11. 13. ~ 11. 30.

2. 주요 내용

- 제안사유: 서구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
- 위치: 국채보상로 187(평리동 1527-20) ※이현공단주유소 옆
- 취득대상: 건물 연면적 853.78㎡(258.3평) / 대지 면적 624.8㎡(189평)
※1994년 준공, 지상 3층(지하 1층) 철근콘크리트조 건물
※현재 공실 상태이며 소유자는 비콘미디아(주)
- 사업내용: 건물 전체(주차장 포함) 리모델링
- 사업기간: 2023. 12. ~ 2024. 12.
- 소요예산: **8,063백만원**(부지매입비 4,580 / 공사비 등 3,483) ※ 재원은 구비 100%
 - 2024년 본예산 일부 편성 : 4,776백만원(부지매입비, 설계비, 부대비)
 -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: 3,287백만원(공사비, 감리비)
- 시설배치계획

구분	시설 배치	면적	비고
4층	옥상	-	정원 조성
3층	사무실 2개, 대회의실(다목적용)	307.92㎡(93.1평)	엘리베이터 설치 (B1~4층)
2층	사무실 5개	301.28㎡(91.1평)	
1층	관리실, 로비(전시실), 사무실 2개	179.22㎡(54.2평)	
지하	기계실, 전기실, 물탱크	65.36㎡(19.8평)	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의2 등

나. 추진경과

- 서구보훈회관 건립 계획 수립 : 2023. 10. 6.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: 2023. 10. 10. ~ 10. 23.
-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: 2023. 10. 23. ~ 10. 24.

다. 향후계획

- 2024년도 본예산 의결 : 2023. 12.
-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: 2023. 12. ~ 2024. 1.
-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: 2024. 2. ~ 4.
- 건물 리모델링 공사 : 2024. 5. ~ 10.
- 서구보훈회관 개소 : 2024. 12.

4. 검토 의견

- 본 관리계획안은 관내 경로당 등에 흩어져 있는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곳에 통합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문화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구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건물 연면적 854m² 정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,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23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(수시2차)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적정 판단을 받은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하자 없이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.
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회관 시설은 현재 대구시와 북구, 달성군, 군위군에서 운영 중이고 중구, 동구, 달서구에서도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보훈사업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,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입지 조건이나 주차 공간 및 건물 구조 등이 보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와,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및 용도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보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나아가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물 활용도 향상 방안이나 관련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) 제13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,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